

거창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 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30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윤리강령을 규정 (안 제2조)
- 의원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도록 하므로서,
-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에 따라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 물론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회의원의 기본입장을 윤리강령으로 정하여 스스로 지켜 이에 부응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며,
-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알고 올바른 의회상 정립에 더한층 기여하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31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및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를 재조정,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현 행		조 정 안	
위 원 회	정 수	위 원 회	정 수
의회운영위원회	5명	폐 지	
총무위원회	6명	총무위원회	5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함(안 제3조)
 - 의회사무과 : 의회운영위원회 ⇨ 총무위원회(10개 부서)
 - 거창사건관리사업소 :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8개부서)
-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함(안 제7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행 3개 상임위원회를 제5대 개원과 더불어 의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의회운영에 필요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최소한의 2개 상임위원회로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정수에서도 5명 이내로 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간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의회운영위원회의 폐지로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였던 의회사무과를 총무위원회 소관부서로 하고 현행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였던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한 것은 적절한 조정으로 판단되나,
- 의회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위원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 한 것으로서 관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32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회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거창군의회회 회기의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안 제3조)
-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로 함(안 제4조)
-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의회의 총회의일수 및 회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 것은 회기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 제1차 정례회를 현행 매년 6월 15일 하던 것을 7월 10일로 조정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지방 재정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조정이 된 것으로서 현실에 맞는 개정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33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감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로 개정 한 것은 의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게끔 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34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 제3호 및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예 따라 “회기수당”
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으로써
- 예산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여비 및 일비의 지급기준을 재조정하
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거창군 결산검
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 쓰기 기준에 맞게 함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
⇒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안 제1조)
⇒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안 제7조)
⇒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함(안 제9조)
-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근거의 현행 관련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비는 거창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하고 일비는 현행 회기수당에 상응하는 1일당 10만원으로 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35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직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각인하여 의회내의 공문서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공인조례”를 “거창군의회 공인 조례”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거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 직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가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 공인의 규격에 각 상임위원장 직인의 규격 규정함(안 제4조의 별표)

- “거창군의회 특별위원장의 직인 : 1.8cm”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 1.8cm”으로 (안 제4조의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의회에서 사용되는 공인 중 대내에 사용되는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을 각인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상임위원회 직인 규격과 함께 규정하므로서 의회운영사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36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요지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및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을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 명 앞뒤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
 - ⇒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 의회운영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로 개정함(안 제3조, 제6조, 제20조의3, 제73조)
-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함(안 제20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함(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인 의원의 의석배정, 의사일정 작성, 위원회의 제출의안, 경호 관련 및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된데 따른 그 역할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하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였으며,
-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에 자구를 개정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마. 의안번호 : 제2006-37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의 색상 등 규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활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거창군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신분증의 규격 등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이 함(안 제3조제1항)
- 신분증의 색상은 연청색으로 함(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의 크기 사진규격 등 기재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색상 또한 황색에서 연한 청색으로 바뀌 신선 하고 생동감 있는 신분증으로 변경하여 군민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의정상을 구현하는 역동적인 의회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 나. 발 의 자 : 신주범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38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등을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전문위원별 직급 [별표]를 조정함(안 제3조)

위원회 명	직 위	직 렬	직 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농업 토목·건축	지방행정·농업· 토목·건축사무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행정	지방행정주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에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 직렬 및 직급은 현행과 같이 하고,
- 현행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6급 전문위원을 특별위원회에 둠으로써 의회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마. 의안번호 : 제2006-39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포상규칙”을 “거창군의회 포상 규칙”으로 띄어 쓰기에 맞게 개정함
- 포상절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본 규칙에 포상대상자 심의 시 포상절차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의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폐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으로 적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의회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6년 7월 20일

나. 발 의 자 : 이수정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마. 의안번호 : 제2006-40호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위원의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 관심분야의 연구단체 및 지원에 따른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하여 왔으나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을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지원을 위한 심의시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폐지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적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년 7월 18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조례안심사등 특별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6 - 28호

2. 개정이유

- 일제시대 잔재로 존치되어온 주상면 1구, 2구 등의 명칭을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명칭으로 변경하여
- 행정리명과 자연마을의 명칭을 일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명칭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내적으로 주민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법정리명	현행	변경(안)	법정리명	현행	변경(안)
도평리	도평1구	도평 (道坪)	성기리	성기1구	원성기 (元聖基)
	도평2구	상도평 (上道坪)		성기2구	정동 (停洞)
연교리	연교1구	임실 (任實)		성기3구	송희 (松希)
	연교2구	연교 (連橋)	거기1구	거기 (渠基)	
내오리	내오1구	오산 (鰲山)	거기리	거기2구	장포 (長浦)
	내오2구	오류동 (五柳洞)		거기3구	고대 (古垈)
완대리	완대1구	완수대 (玩水臺)		남산리	남산1구
	완대2구	도동 (道洞)	남산2구		포덕동 (飽德洞)
	완대3구	넘터	남산3구		보광 (寶光)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상룡)

- 동 조례안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필요에 의해 각 행정마을명을 법정리명에 붙여 1구, 2구, 3구 등으로 나누어 사용되었으나 해방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마을명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연 마을명으로 변경·사용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먼저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즉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이 행정마을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명칭과 가장 관련이 깊은 조례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후속적인 조치로써 관련조례인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상의 비고란에 표시되어 있는 행정 마을명을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함에도
 - 이장의 정수인원은 增減변동이 없는 현실에서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마을 명칭을 개정·공포토록 하는 것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는 각 조례 제1조(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해 제정되었고, 조례내용이 상호 밀접하므로 이를 통합·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며

- 특히 관내의 지명 제정이나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은 비록 지방자치법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됨
- 끝으로 동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이번 행정마을명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지도 및 군도 작성, 마을 이정표, 군지, 각종 공부 등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7. 18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6년 7월 24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6년 7월 24일(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마. 의안번호 : 제2006 - 29호

2.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며,
-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 휴가· 장기재직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4.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안상룡)

- 동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할 시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먼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1조에 의거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입법예고 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는 '06. 5. 11부터 5. 31까지 입법예고한 사실이 있었으며

- 개정조례안의 조항과 관련하여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표준안에 의해 개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제23조(특별휴가) 부분에서는 표준안과 이미 시행중에 있는 경남도청 및 타시군의 복무조례 내용을 참조하여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거창군지부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안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별첨자료를 살펴보면
 - 경조사에서 본인의 결혼인 경우는 표준안, 지부안, 경남도 및 17개시군이 7일로 되어 있으나 5일로 정한 부분과,
 - 경조사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에는 표준안, 지부안, 경남도 및 17개시군이 5일로 되어 있으나 7일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개정복무조례중 제26조(겸직허가), 제27조(정치적 행위)의 삭제조치는 이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1조에서 명기되어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를 또다시 재론할 이유가 없음을 알고 비록 기존조례이지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시에 함께 정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